

대전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
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대전광역시장 엄 홍 철

2005년 11월 11일

대전광역시 조례 제3362호

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
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
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자전거이용시설”이라 함은 자전거도로·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(원동기를
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차를 제외한다. 이하 같다)의 이용과 관련 되는 시
설로서 영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.
2. “자전거주차장”이라 함은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
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.
3. “자전거정비소”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유무를 보살피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
는 곳을 말한다.
4. “시민자전거”라 함은 대전광역시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
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 등) 대전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호의 시책

을 강구하여야 한다.

1.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
2.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
3.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
4. 자전거이용의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
5.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

제4조(시민의 권리와 책무) 모든 시민은 다음 각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.

1.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
2.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
3.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

제5조(정비계획의 수립) ①시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(이하 “정비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정비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, 영 제4조에 규정한 사항 및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자전거이용 실태조사
2.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
3. 시내버스,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자전거 이동
4. 자전거주차장의 설치
5. 자전거이용 관광코스 개발
6. 자전거의 방치 및 도난방지에 관한 사항
7.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
8.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

③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④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.

제6조(개선기준의 설정) 시장은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함에 있어 「자전거이용 시설의구조·시설기준에관한규칙」 및 자전거 도로의 조명시설 등 추가적인 설계지침을 고려하여 개선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.

제7조(재정지원) ①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시장은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.

③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 승인과 시민홍보물 등을 제작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자전거주차장의 설치) ①시장 또는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.

②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동차 주차대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보관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.

③ 시내버스정류장, 도시철도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.

④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관할 구역안에 있는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.

⑤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제9조(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)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「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·시설기준에 관한 규칙」에 의한다.

제10조(자전거주차장의 관리) ①자전거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.

②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③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·운영하여야 한다.

제11조(자전거의 주차요금)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.

제12조(시민자전거의 운영) ①시장 또는 구청장은 시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민자전거 관리·운영을 비영리 법인·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제13조(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·운영) ①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, 민간기업,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내 시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·통학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.

③시장은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·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4조(자전거이용의 날 지정·운영)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
제15조(자전거타기의 교육 등) ①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16조(전담부서의 설치) 시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17조(위원회의 설치)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18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정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변경
2. 자전거이용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
3.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의견 시책반영 사항
4.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및 교육,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

제19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고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③위원은 교통국장, 도시건설방재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중 시장이 위촉한다.

1.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2인
2. 유관기관 공무원(대전광역시교육청, 충남지방경찰청)

3. 자전거 이용과 관련 있는 시민단체 대표

4. 그 밖에 시장이 자전거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20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

2. 제19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상실된 때

3.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

제21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.

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자전거업무 담당과 장으로 한다.

제22조(회의)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매년 1월과 7월에 개최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.

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23조(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「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·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

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2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